

2021년도 문화콘텐츠 테크업 브릿지 지원사업 공고

(재)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문화산업분야 테크업(제작역량 강화)이 필요한 도내기업과 해당 파트의 청년인력 간 매칭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 <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>의 일환으로 「2021년도 문화콘텐츠 테크업 브릿지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- 문화산업분야의 테크업(제작역량 강화)이 필요한 도내기업이 청년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(인건비, 교통비, 교육 등 지원)하여, 기업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

2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1. 12. 31.
- 지원대상
 - 산업 현장에서 CT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분야의 도내기업 중 청년(1월 1일 기준, 만18세 ~ 39세 이하)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단체(영리법인, 비영리법인,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)
- 채용지원 가능 분야
 - AR, VR, 5G, 빅데이터, 3D, 코딩 등 첨단 CT기술 집약적 비즈니스모델(콘텐츠, 상품) 관련 기획/개발/연구/운영 직무
 - 공연, 전시 등 공간형 콘텐츠 관련 기획/개발/연구/운영 직무
 - 문화산업 외 분야에서 비대면·디지털 혹은 CT기술이 결합된 콘텐츠 또는 상품 관련 기획/개발/연구/홍보/운영 직무

○ 용어정의

- 문화산업 : 영화, 비디오, 음악, 게임, 출판, 방송영상물, 문화재, 캐릭터, 애니메이션, 공연, 미술, 공예, 멀티미디어콘텐츠(앱, 어플리케이션 등), 문화기획, 디자인 등, '문화산업진흥기본법'에 의거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분야
- CT기술 : Culture Technology의 약자로, 문화산업기술을 의미함. 애니메이션, AR·VR, AI 응용기술, 문화 복원 기술 등 첨단 문화기술 뿐만 아니라, 디자인, 공예 등 예술분야에 해당하는 문화기술까지 포괄

○ 지원내용

- 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 : 협약일 ~ 2021. 12. 31.
- 지원금액 : 약정된 신규채용 시, 1인당 인건비 연 2,400만원의 90% 지원

- ※ 월 급여의 90%를 지원하며, 최대 월 180만원까지 지원
- ※ 기업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인력에게 월 보수 2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, 기업부담분 4대보험료는 기업에서 부담
- ※ 행정시 동 지역외 읍·면 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 내 지원

사례	교통비 지급액
행정시 동지역외 읍·면 지역 거주자가 다른 읍·면지역으로 출근	월 10만원 지원
동일 읍·면 지역 내에서 출근	월 5만원 지원
행정시 동지역에서 타 행정시 동지역으로 출근 (예: 제주시 이도2동 -> 서귀포시 동홍동 출근)	지원불가

○ 전체 지원 인원 : 총 60명

- ※ 전체 신청서 취합 후,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별 지원 인원을 확정하여 배정함
- ※ 선정 이후, 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해 결원 발생 시에는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

○ 기업별 지원 인원 산정방식

-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(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인원 제외)의 50% 범위 내에서 지원(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 절상)
- 단,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

예) 상시근로자 4명인 A기업의 경우 : 3명까지 신청 가능
 상시근로자 11명인 B기업의 경우 : 6명까지 신청 가능
 상시근로자 15명(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인원: 5명)인 C기업의 경우 : 5명까지 신청 가능

- ※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<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>, <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사업> 등 기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수혜기업은 지원인원 산정 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함

○ 필수 근로조건

-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무
 - ※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,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
- 근무기간 : 협약 후 채용일 ~ 2021. 12. 31.까지
- 임금 : 1인당 연 2,4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정하고, 임금의 90%는 본 사업을 통해서 지원(1인당 최대 지원금은 월 180만원으로 제한)
 - ※ 기업 자부담 : 임금의 10% 이상(4대보험료 기업부담분 별도 부담)
 - ※ 임금(월 보수액)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,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※ 추후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,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

수 없음

3. 신청접수

- 공모기간 : 2021. 1. 18(월). ~ 2021. 1. 29(금)(12일간)
- 접수기간 : 2021. 1. 18.(월) ~ 2021. 1. 29(금) 18:00까지
 - ※ 방문접수의 경우, 평일(09:00 ~ 18:00까지)만 접수 가능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혹은 방문 접수
 -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jejuvc.or.kr>)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(※ 붙임자료 참조)
 - ※ 제출마감 기간 전까지 제출서류 보완은 가능하나, 마감시한 이후 신청접수 관련 자료 일체 접수 불가
- 접수처
 - 이메일 접수 : allmore@ofjeju.kr
 - 방문접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82,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2층 문화산업팀 김하섭 선임연구원
 - 문의처 : ☎ Tel : 064) 735-0618 / ✉ E-mail : allmore@ofjeju.kr
-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참가신청서 및 계획서	각 1부	붙임1. 신청양식 활용
2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1부	○ 법인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○ 개인사업자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1부	○ 붙임1. 신청양식 활용
4	기업·단체(법인)소개서	1부	○ 붙임1. 신청양식 활용
5	국세·지방세 납입 증명서	각 1부	○ 사본 제출 가능
6	4대보험 완납 증명서	1부	○ 사본 제출 가능
7	평가위원 추천표	1부	○ 붙임1. 신청양식 활용
8	자가진단서 및 서약서	각 1부	○ 붙임1. 신청양식 활용
9	기타 증빙 서류		○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

4. 평가

- 기업선정평가 : 외부전문가 15인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풀을 구성하고, 신청기업이 무작위로 지정한 3회의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
- 평가방법 :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진행
 - ※ 고용의 질, 기업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며, 심사결과에 따라서 기업에서 신청한 지원인원 수와 확정 지원인원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 선정기준

-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함
- 우대가점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
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기업 안정성	○ 신청기업의 주요 비즈니스모델의 명확성 및 안정성	40
	○ 신청기업의 연 매출 및 회사 규모	
고용 계획의 우수성	○ 급여 등 근로조건외의 우수성	60
	○ 채용인원 수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의 명확성	
	○ 사업종료 후 고용계획의 우수성	
합 계		100

○ 우대가점

우대사항	가점
○ 본 사업을 연계한 채용계획 인원이 기준치(3명)보다 많은 경우	4명(1점)
	5명(2점)
	6명 이상(3점)
○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(예비사회적기업 포함)인 경우 - 증빙서류 제출 필수	사회적기업(2점) 예비사회적기업(1점)
○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인 경우 - 증빙서류 제출 필수	여성기업(1점)

※ 모든 가점사항은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

○ 결과발표 :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시 후 선정기업 개별 통보

○ 과제수행절차



5. 참여제한

○ 기업
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,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

※ 4대보험 적용제외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은 참여 가능

예: 국민·건강·고용보험 가입,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

유급근로자가 없는 비영리법인·단체는 4대보험 미가입 참여 가능

체납이 있더라도 국세청 ‘완납증명서’ 발급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 가능

-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사업주

※ 단, 동사업 참여기업이 참여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1년간 참여 제한

-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(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)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사업주
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
○ 청년

-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

※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하고,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할 경우 참여 가능

- 2021년 1월 1일 기준, 만 18세 미만 또는 만40세 이상자

-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(기업 또는 단체)에서 1년 이내 이직한 자

- 구직신청(워크넷) 신청이 되어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자

- 참가기업 대표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(단, 결혼이민자 제외)

- 현재 취업상태인 자

※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(단, 일용근로자 제외),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

-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(휴학생 포함)

※ 단, 대학교(원) 수료생,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야간 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 가능

※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(또는 2·3년제의 경우 마지막학기)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,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 자

-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

● 중복참여란 ‘동일한 기간’에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

● 반복참여란 ‘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’를 말하며, 최근 3년간 2년까지만 허용하고,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함

※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의미

-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

-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

- 기타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※ 유의사항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
-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- 사전검토 결과,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 -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 - 신청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(개인)는 참여불가
 -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 - 법정관리·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회생, 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- 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6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, 소명자료를 위조·변조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참여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지침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, 제주특별자치도와 참여기업간의 약정서, 행정안전부 “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”에 의하고,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음
-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이 선정기업수 혹은 목표치에 미달될 경우, 공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-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(자), 수혜기업(자)의 책임으로 봄
-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제재조치 내용(수행기관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음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
- 자세한 내용은 [붙임2.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 지침] 참고

7.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

- 부정수급의 주요유형
 - 지원금(보조금)의 목적외 사용(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)
 -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

-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
 -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
 -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
- 부정수급 처분
-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
 -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

2021년 1월 18일
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원장